

Contents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1. 추진배경	3
2. 추진경과	4
II.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	5
1.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 과정	7
2.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	9
III.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	11
1.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	13
2.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	16
IV. 노숙인 복지 추진방향	19
1. 비전 및 정책목표	21
2. 추진방향	22
3. 사업대상	23
V. 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	25
1. [예방]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	27
2. [지원]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	32
3. [사회복귀]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	44
4. [인프라]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	46
VI.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	51
VII. 과제별 소관부처	55

Part I

추진배경 및 경과

1. 추진배경
2. 추진경과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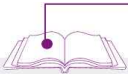
I

추진 배경 및 경과

1 추진배경

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」('12.6)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5년 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(제1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: 2016 ~ 2020)



노숙인 종합계획의 주요 사항(노숙인복지법 제7조)
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·사후관리 및 감소방안
3.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
4. 노숙인시설의 설치·확보 및 주거지원·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
5.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6.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

- 분절적·사후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숙인 관리의 체계화
 - －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 노숙인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공유
 - － 예산, 인력, 조직 등 소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 설정
- 노숙인복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 시행계획 수립·시행

노숙인복지법 제8조

제8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 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 추진경과

-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('10. 2월)를 통해 노숙인복지법 제정 추진
-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('11.12월)를 통해 근거자료 확보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2.6.8)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('12.12)
-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('13.11)
-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방안 연구('14.12)
- 「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」 수립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5회, '14 ~ '15.6)
- 노숙인복지종합계획 초안 마련('15.6)

Part II

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

1.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
2.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II

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및 평가

1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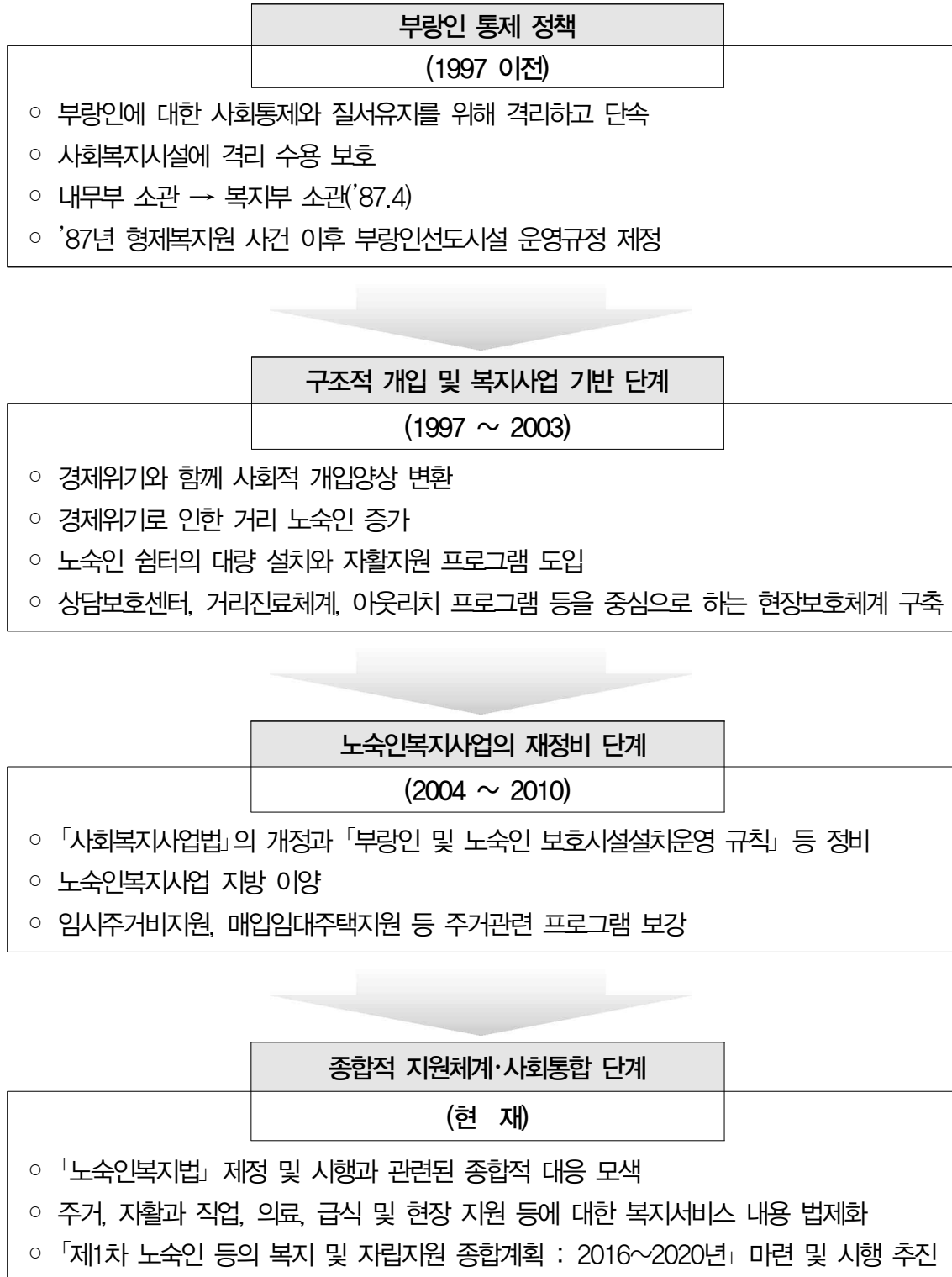
■ 노숙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

노숙인복지정책은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'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거리노숙인 증가 후 체계화된 노숙인복지제도로 개편되고 있음.

- 첫 번째 시기(1997 이전)는 부랑인 보호 대책시기로 통제적 개입이 중심이 되어 사회 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격리 및 단속
- 두 번째 시기(1997 ~ 2003)는 1997년 경제위기로 노숙인 쉼터의 설치와 자활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실직 노숙인의 사회복귀 도모
 - 2000년 이후 자활 및 재활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며 상담보호센터와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현장보호체계 구축
- 세 번째 시기(2004 ~ 2010)는 2004년 이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개정과 「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 규칙」 등의 정비로 법적 제도화 마련
 - 노숙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정책 프로그램이 이원화되고 임시주거비지원, 매입임대 주택지원 등의 주거관련 프로그램이 보강
- 현재(2011 ~)는 2012.6월 노숙인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포괄적 정책수립의 기반이 마련되어 종합적 대응모색의 시기

* 주거, 자활, 직업, 의료, 급식 및 현장지원 등 복지서비스 내용이 종합적으로 법제화

■ 우리 나라 노숙인 정책의 변천 과정



2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

■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

- 사회 보호 목적의 부랑인 통제정책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대상
- 경제위기 이후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 파악과 자활을 위한 개입 모색
-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지원을 극복하고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법 제정⁽¹²⁾
-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일시보호시설, 노숙인자활, 재활 및 요양시설, 노숙인 급식 시설, 노숙인진료시설, 쪽방상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복지시설 마련
- 주거지원서비스, 의료지원서비스, 고용지원서비스 등 주거와 복지, 의료,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
- 변화된 환경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「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」 마련 및 시행

■ 노숙인 복지정책의 과제

- 노숙인 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좁혀 모든 노숙인 등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
- 상대적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노숙인에게 복지서비스 및 공공전달 체계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강화
-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
-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의 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력구조 필요
- 분절적이고 파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연속성 있는 보호체계 구축
- 노숙인 정책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

Part III

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

1.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
2.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Ⅲ

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 및 원칙

1 노숙인복지정책의 여건

■ 전체 노숙인 등의 수는 약 1.2만여명 : 시설생활 노숙인(1만1천여명)은 지속 감소
중이고 거리노숙인(1천여명)은 소폭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중임('14.12월)

- 지역적으로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경기 등 대도시 중심으로 노숙인 거주
※ 노숙인 12,347명, 쪽방주민 6,147명('14. 12월말 기준)
- 노숙시설별 노숙인의 특성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지원체계의 특정 욕구를
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
〈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(보건복지부 내부자료, 2015)〉

(단위 : 명)

연 도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합 계	15,785	15,173	14,266	14,288	13,930	13,152	13,145	12,391	12,656	12,347
자 활	3,763	3,563	3,363	3,479	3,404	3,117	3,282	2,741	2,095	1,949
일시보호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	844	899
거 리	959	1,293	1,181	1,317	1,260	1,077	1,121	1,081	1,197	1,138
재활·요양	11,063	10,317	9,722	9,492	9,266	8,958	8,742	8,569	8,520	8,361

〈시·도별 노숙인 현황(보건복지부 내부자료, 2015)〉

(단위 : 명)

구 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합 계	12,347	4,248	884	1,251	809	167	359	53	112	1,181	341	802	78	229	764	391	510	168
자 활	1,949	1,116	161	132	38	16	112	30	-	216	50	17	25	36	-	-	-	-
일시보호	899	636	38	22	11	-	20	7	-	93	4	22	25	9	1	-	-	11
거 리	1,138	308	124	124	141	6	38	16	-	294	50	6	28	-	-	-	1	2
재활요양	8,361	2,188	561	973	619	145	189	-	112	578	237	757	-	184	763	391	509	155

- (재원의 이분화) 기존의 부랑인 시설인 재활·요양시설과 거리노숙인 중심 시설인 자활·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되어
 - － 재활·요양시설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, 거리노숙인사업·자활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·쪽방주민지원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('05)임
 - ☞ 따라서 「지방분권특별법」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은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

■ 노숙인복지 전달체계

- 노숙인시설은 생활시설인 자활·재활·요양시설과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·일시보호시설·급식시설·쪽방상담소 등으로 구분

〈노숙인시설 현황(보건복지부 내부자료, 2015)〉

(단위 : 개소)

시설유형	합 계	종합지원 센 터	일시보호 시 설	자활시설	재활·요양시설	쪽 방 상담소
시설 수	150	10	8	64	58	10

- 노숙인지원서비스는 거리노숙인 응급지원서비스, 주거지원서비스, 급식지원서비스, 의료지원서비스,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음
- 전국의 노숙인 시설은 150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1,935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음('15)

〈노숙인시설 현황(보건복지부 내부자료, 2015)〉

(단위 : 개소)

구 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합계	150	52	14	10	8	2	8	1	1	18	8	4	1	5	7	4	4	3
종합지원센터 (구,상담보호센터)	10	2	2	1	-	-	1	-	-	3	-	-	-	-	-	-	-	1
일시보호시설	8	4	-	1	-	-	1	-	-	1	1	-	-	-	-	-	-	-
노숙인자활시설 (구,노숙인쉼터)	64	27	5	5	3	1	4	1	-	10	4	1	1	2	-	-	-	-
노숙인재활· 요양시설 (구,부랑인시설)	58	14	5	2	4	1	1	-	1	4	3	3	-	3	7	4	4	2
쪽방상담소	10	5	2	1	1	-	1	-	-	-	-	-	-	-	-	-	-	-

■ 노숙의 결정적 계기에 대한 분석

- 노숙인은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(41.9%),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(24.5%), 직장으로부터 쫓겨남(13.4%) 등 경제적 요인
⇒ 신용회복, 근로 등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필요
-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(31%),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(10.5%), 사회복지시설 퇴소(8.3%), 교도소 출감(8.3%) 등 제도적 연계단절에 따른 사회적 요인
⇒ 지지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필요
- 정신병 증상의 급격한 악화(13.0%),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중독(12.3%) 등의 개인적 요인
⇒ 중독지원센터,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담, 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

노숙의 결정적 요인(복수응답: N=277, 성공회대학교)

	카운트	퍼센트
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나옴	29	10.5%
본인의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	86	31.0%
배우자 사망	9	3.2%
사회복지 시설에서 퇴소	23	8.3%
군대 제대	8	2.9%
교도소 출감	23	8.3%
정신병 증상의 급격한 악화	36	13.0%
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	34	12.3%
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	116	41.9%
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	68	24.5%
직장으로부터 쫓겨남	37	13.4%
전 체	469	169.3%

2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

-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
- 노숙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 추진
- 소득, 일자리, 주거,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
- 다양한 경로(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단체 등)를 통한 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 준수
-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의 원칙
(대규모 시설 → 소규모 시설 →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)

■ 기존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보호체계 내 흡수 필요

- 다른 복지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복지서비스체계에 소외되었던 이들을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전달과의 연계 중요

■ 노숙의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

- 거리노숙인에게는 거리 노숙 및 장기화를 예방하고,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시설 입소자에게는 근로와 생활기술 습득 등으로 사회 복귀 지원
- 건강상 이유로 장기입소가 필요한 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은 시설의 환경개선, 건강회복을 지원하고, 특히 일 할 능력이 있는 재활시설 입소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지원

■ 소득, 일자리, 주거,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

- 복지부는 노숙인시설서비스 지원 및 노숙인복지서비스 조정의 역할
- 국토부(주거지원), 고용부(고용지원)등 노숙인 지원 유관부처와 협력

■ 다양한 주체(지자체, 민간단체 등)를 통한 유기적 서비스 제공

- 노숙인지원정책은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
 - 중앙정부 : 노숙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, 주거·의료·고용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
 - 지방정부 : 지방차원의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,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인 조정, 지역내 협력 및 혁신 체계 확보
 - 민간기관 : 민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자원활동가 활용확대, 노숙인에 대한 직/간접적 서비스의 지원 및 관리

■ 지역사회 보호의 원칙

- 지역사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시설-지역사회 간의 연계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 - － 보호의 지속성을 위한 연속체계 강화
 - －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로 지역사회와의 상호간 영향력 확대

■ 기존 시설의 활용과 단계적 전환

- 시설 내의 통합적 서비스 보다는 거주시설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도모
 - －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시설 → 소규모 시설 →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
- 각 기관 특성별 이용자 욕구에 맞춘 필수적 서비스 제공

Part IV

노숙인 복지 추진방향

1. 비전 및 정책목표
2. 추진방향
3. 사업대상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IV

노숙인 복지 추진방향

1 비전 및 정책목표

목 적

복지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

목 표

- 예방-재활-자립까지의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
- 주거-의료-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
- 현황·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화

분야별 추진 과제

4대 분야

13대 세부 추진 과제

1. (예방) 노숙인 예방 및
초기 노숙인을 위한
지원 시스템 확립

- 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
- ②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

2. (지원) 노숙인
특성별 지원체계
구축

- 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
- ②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
- 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
- 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
- ⑤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

3. (사회복귀)재정착을
위한 관련
복지서비스 연계

- 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
- ②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
- 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

4. (인프라)질 높은
서비스를 위한
인프라 강화

- ① 거리 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
- 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
- ③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

2 추진방향

-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노숙이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노숙인의 감소를 위해서는 가족 해체 문제, 경제 활성화, 실업대책 등의 경제·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
- 이번, 노숙인 종합계획은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, 노숙 취약계층의 노숙 방지 예방 및 특성별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에 중점

■ 【예방】 취약계층의 거리노숙 유입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

- 기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및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
- 현장보호활동(아웃리치서비스)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노숙 조기발견과 거리로의 유입 가능성 축소
- 거리에서 생활하는 위기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조속히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계획 기간 내 거리노숙인의 감소 유도

■ 【지원】 거리노숙인과 만성적 노숙인의 특성별 복지지원체계 구축

- 노숙인 시설의 기능 재편과 시설에 생활하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감소 유도
- 노숙인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, 의료, 고용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

■ 【사회복귀】 효과적인 사회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

- 노숙인이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
-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거리노숙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·고용·의료 등과 관련복지서비스 연계

■ 【인프라】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

-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노숙인 정책평가 및 노숙인 종합계획의 수립
- 범부처간, 민관합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
-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숙인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

3 사업대상

- 서울·부산·대구 등 대도시 역사 주변의 노숙인 밀집지역에 생활하는 1천1백여명의 거리노숙인
- 전국 17개 시·도에 산재한 노숙인 자활·재활·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1만1천2백여명의 시설 노숙인

Part V

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

1. [예방]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
2. [지원]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
3. [사회복귀]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
4. [인프라]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V

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

1 [예방]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립

1 노숙 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

가. 현 황

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, 정보제공, 지원이 제한적

- 취약계층 중 특히 노숙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부족
- 제한된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노숙의 장기화 방지 및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이 어려움

〈주거상담을 의뢰받은 기관 비중(서울시, 2013)〉

구분	주민센터	사회 복지관	보건소	관리 사무소	기타 복지기관	시민사회 단체	합계
비율(%)	51.3	17.8	3.8	3.7	18.0	5.5	100

■ 사실상 노숙과 유사한 상태이나 국가,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존재

- PC방,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대한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이 미흡

* 비숙박다중이용업소를 거처로 삼는 인원 : 62,453명(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, 2011)

나. 추진계획

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강화

- 사회보장급여법* 시행('15.7.1)으로 단전·단수·월세체납 등 노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 발굴, 지원 가능

*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-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사회복지협회의 좋은이웃들 등과 연계하여 노숙전락 위험 가구 발굴 강화
-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취약 가구는 일을 통한 안정적 주거확보를 위해 고용부의 취업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알선

-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('15.12.15 오픈)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

② 노숙위기 계층에 대한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연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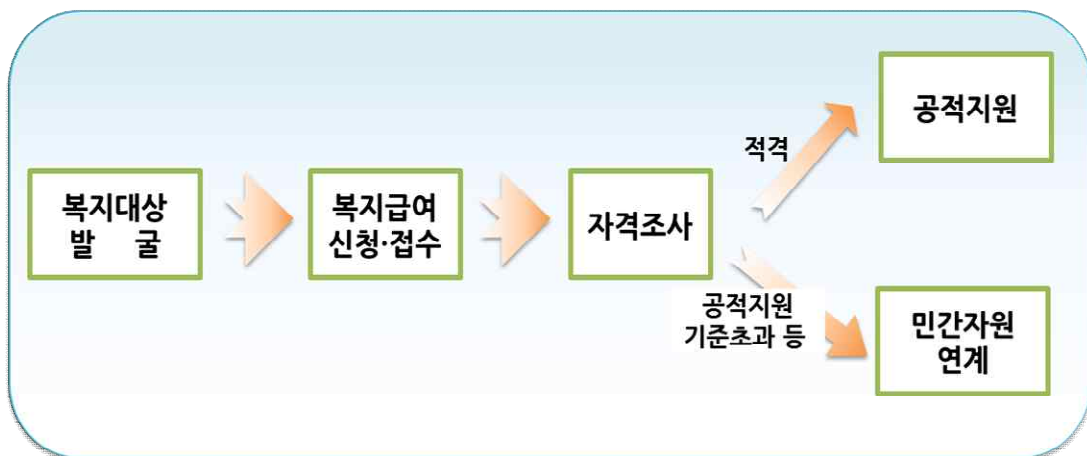
- 소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등 관련사회복지 서비스* 연계를 통한 노숙 방지

* 노인 장기요양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 적극 이용

-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, 방문 상담·후원물품 등 지원

*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,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

〈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〉



③ 노숙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 강화

- 초기 노숙인*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시·군·구에 긴급지원 신청 활성화
-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상담역량 강화

* 노숙경험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

- PC방, 찜질방 등 노숙과 유사상태인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거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숙인복지시설 등의 안내를 위한 현장보호활동(아웃리치) 강화
- 노숙인으로 유입 위험이 높은 취약가구가 주로 방문하는 주민센터, 구청 등에 노숙인 복지관련 정보의 구비 및 안내상담 시행

2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(아웃리치) 체계 구축

가. 현 황

■ 노숙인 집중지역 중심의 현장보호활동 실시

- 대도시의 거리노숙인 집중지역은 정기적인 현장보호활동이 제공되나, 중·소도시나 거리노숙인 분산지역은 비정기적으로 시행

〈지자체별 종합지원센터 수 및 현장보호활동 상담인력 현황〉

(단위 : 명)

구 분	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수	거리노숙인 수 (2014)	아웃리치 상담인력	비 고
서울특별시	5	764	40	계절에 따라 유동적 운용
인천광역시	1	139	2	
대전광역시	1	50	7	
대구광역시	1	131	6	
부산광역시	2	110	8	
경기도	2	154	4	
제주특별자치도	1	7	2	
합 계	12	1,355	69	

■ 통일적인 현장보호활동 서비스 수준을 위한 매뉴얼 미비

-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의 수준은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인 경우부터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까지 지역적 차이가 존재
-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, 이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양질의 현장활동 활동 서비스 제공 불가
 - ※ 현재 현장활동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 지자체는 1곳('13년, 서울시)

나. 추진계획

① 중앙정부는 현장보호활동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현장보호활동 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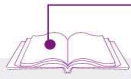
- 매년 지자체는 거리노숙인이 밀집된 지역 및 산재된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현장보호활동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
 - － 현장보호활동 팀별로 관할 구역 내 정기적 보호활동을 통해 지역의 접근성있는 종합지원센터(또는 일시보호시설 및 응급잠자리) 연계 강화

② 거리노숙인 현장활동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

-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원 전문성 확보 및 거리 활동 전문가 양성
 - － 거리노숙인 현장활동 매뉴얼의 보급 및 아웃리치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 훈련 실시
 - － 전국단위 공통 거리노숙인 상담 매뉴얼의 개발 추진

③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 (HONet : Homeless Outreach Ne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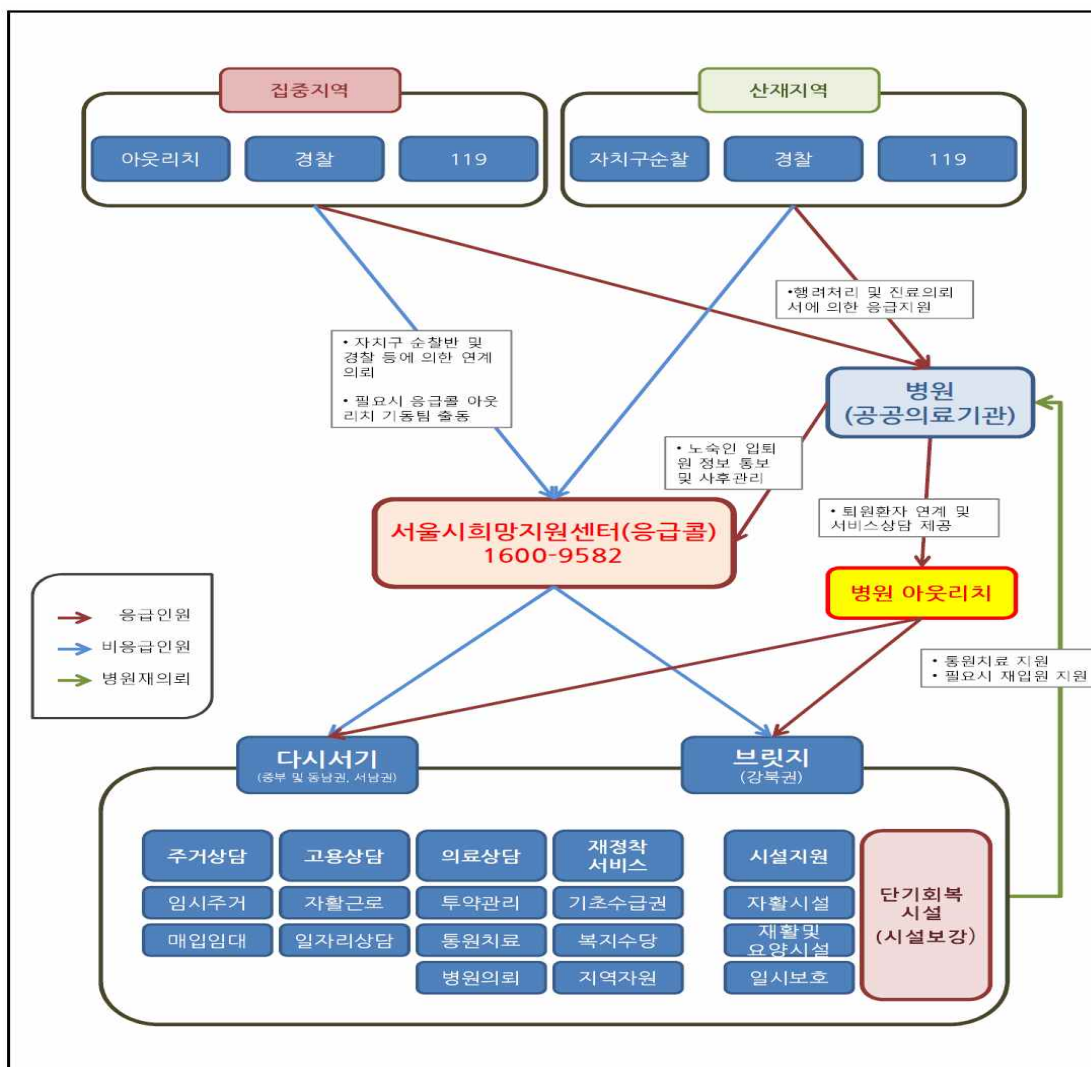
- 지역별 소방방재청, 경찰청,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 민간단체 등과 노숙인 지원 네트워크 구성
 - － 지역별 업무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 및 상호 이해증진
 - ※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협의추진



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역할 사례(서울시)

- 종합지원센터 : 24시간 거리노숙인 신고 접수 대기, 즉시 출동(필요시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출동요청)
- 경찰청 : 지역내 거리노숙인 발견시 관할 노숙인시설 및 응급대피소 이송지원, 응급상황시 소방방재청 협력을 통한 국/시립병원 응급이송
- 소방방재청 : 응급인원 발생시 즉시 출동 및 현장 응급처치, 경찰청 협력을 통한 국/시립병원 응급이송
- 자치구 : 거리노숙인 상주지역의 지속적인 확인 및 순찰, 노숙인 시설 안내 및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청, 소방방재청 연계 후 종합지원센터 상황 공유
- 국/시립병원(노숙인 지정병원) : 응급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지원, 퇴원시 종합지원센터 연계로 재노숙의 방지

〈서울시 노숙인 아웃리치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〉



2 [지원]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

1 취약시기(혹서기, 혹한기)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

가. 현 황

■ 취약시기 집중적인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 필요

-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과는 달리 거리노숙인 중에는 독거노인, 장애인, 알코올 중독자 등이 많아 혹서기 열사병, 동절기 동사사고 발생 우려
 - － 따라서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필요
 - ※ 추진기간 : 7.1 ~9.30(혹서기, 3개월), 11.1 ~3.31(혹한기, 5개월)
- 중앙에서 취약시기 보호대책 수립 후 지자체에 자체실정에 맞는 보호대책 수립하도록 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그 실적을 보고 받음

나. 추진계획

① 응급 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

- 동사 및 열사병에 노출된 거리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
- 거리노숙인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Hot-line* 구축·운영
 - * 예) 서울 1600-9582(구호빨리) 위기대응콜 운영 중

②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

- 현장대응팀(사회복지사 등 종합지원센터 기존직원)과 보건팀(정신보건전문요원, 촉탁의 등)*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·운영
 - *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병원입원 치료 등 적극 유도
- 취약한 노숙인(여성, 만성노숙인)대상으로 임시주거비 지원
- 아웃리치(거리상담) 활동 시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침낭, 매트, 얼음물 등 제공

2 노숙인시설체계의 전문화

가. 현 황

■ 노숙인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화 부족

- 노숙인시설은 법규상 유형별(자활시설, 재활시설, 요양시설)로 구분되나 실제로는 이용자가 혼재되어 서비스의 특성 및 전문성 부족

〈노숙인시설의 유형 및 기능(노숙인복지법 제10조)〉

유 형	주요기능	비고
노숙인자활시설	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
노숙인재활시설	신체 및 정신장애인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국고
노숙인요양시설	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	국고
노숙인일시보호시설	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	
노숙인종합지원센터	주거·의료·고용자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, 응급조치, 복지 서비스 이력관리, 심리상담 등	
노숙인급식시설	노숙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	
노숙인진료시설	노숙인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	

〈노숙인 시설 현황(보건복지부 내부자료, 2015)〉

(단위 : 개소)

구 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합 계	150	52	14	10	8	2	8	1	1	18	8	4	1	5	7	4	4	3
종합지원센터	10	2	2	1	-	-	1	-	-	3	-	-	-	-	-	-	-	1
일시보호시설	8	4	-	1	-	-	1	-	-	1	1	-	-	-	-	-	-	-
노숙인자활시설	64	27	5	5	3	1	4	1	-	10	4	1	1	2	-	-	-	-
노숙인재활· 요양시설	58	14	5	2	4	1	1	-	1	4	3	3	-	3	7	4	4	2
쫓방상담소	10	5	2	1	1	-	1	-	-	-	-	-	-	-	-	-	-	-

■ 노숙인시설의 대형화로 인해 입소자의 삶의 질 저하

- 노숙인시설은 타 분야 사회복지생활시설과 같이 대형화로 입소자는 많고 시설공간은 협소
- 노숙인시설은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움(보통 1실 5~6명이 사용)

■ 여성·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호시설 부족

-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중은 전체의 7.5%(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, 2011)로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
 - ※ 실태조사시 전체의 3%로 조사된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실태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
- 여성·청소년 등의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,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
 - ※ 여성전용시설은 자활시설 5개소, 재활·요양시설 2개소, 일시보호시설은 전무

나. 추진계획

①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는 시설·인력기준 마련

- 노숙인시설(자활, 재활, 요양)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이 시설유형에 적합하도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
 - － 재활시설과 자활시설은 생활공간 확충 등을 통하여 사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기준 강화

②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절차 개선

- 신규 입소자들은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 안내
- 기존의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노숙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합한 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추진

③ 여성·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 강화

- 여성, 청소년 등 상대적 취약 노숙인에 대해 현장보호활동 및 상담 등의 보호활동 강화
- 여성노숙인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노숙인 전용 일시보호시설 설립 추진

3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

가. 현 황

- 국토부·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대상 주거지원사업의 물량이 부족하고,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

〈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시행이후 2014년까지 실적(대한변협, 2015)〉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쪽방거주민	비닐하우스	고시원/여인숙	범죄피해자	노숙인
인원	2,913	1,596	973	307	18	19

- 임시주거비지원사업*, 임대주택지원사업** 등 노숙인대상 주거지원사업 유형이 다양화 되는 성과는 있으나, 수량은 여전히 부족하고, 지원시기도 한시적임(2~6개월)

* 지자체 등에서 주거를 마련하여 노숙인을 입주시킴(노숙인은 무월세로 거주)

** 지자체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고 거주 노숙인은 월세 부담

※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 실적 322(11년), 490(12년), 572(13년)

-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지원주택사업은 지자체 위탁운영, 민·관협력, 민간운영의 3개 형태로 운영 중이나 개소수가 매우 적음(현재 4개소에 불과)

〈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현황〉

구분	희망원룸(2개소)	굿피플하우스(1개소)	은혜원룸(1개소)
입주자 수	55명	30명	26명
운영형태	지자체(서울시)	민·관협력(종민협*)	민간(원불교)

* 종교계(개신교, 불교, 천주교, 원불교) 노숙인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('12)

■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미흡

- 알콜중독, 정신질환 및 장애 등을 동반한 만성적 거리노숙인의 주거지원 미흡
 - － 주거지원사업이 자활의지의 여부에 따라 주로 지원되고 있어 노숙인 중 가장 취약한 만성적 거리노숙인은 주거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향 있음

나. 추진계획

①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 강화

-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복지 시설에서의 보호 강화
 - － 현장보호활동시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를 유도하여 거리에서 잠자는 분을 최소화

② 자립의지,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확대

- 노숙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의 확대 지속 추진
 - － 임시주거비지원, 매입임대주택지원 등 주거지원사업의 확대 및 민관 참여 유도
-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*의 단계적 확대
 - － 매년 노숙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60개소 이상 확보 추진(국토부)

* 매입·전세임대주택을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거주 노숙인이 월세+보증금 부담

〈연도별 노숙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 확보 수량〉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호 수	60호	60호	60호	60호	60호

- 질환이나 장애를 동반한 노숙인은 단순한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주택지원 확대

〈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운영 계획〉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사업 확대 및 안정		1개소	1개소	1개소	1개소
운영 개소 수	4	5	6	7	8

③ 여성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 우선지원

- 지자체에서 여성·청소년·가족노숙인,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등이 임시 주거비를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4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

가. 현 황

■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정 및 시설 이용 어려움

- 노숙인에게 지원되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은 지정 및 취소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건도 까다로와 적기 발급 및 취소 곤란
 - ※ 노숙인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: 총 835명, 서울 805명, 부산 22명, 대구 3명, 경기도 5명('14.12.31 기준)

〈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〉

인적기준	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노숙인 등”에 해당하는 자 • 노숙인 일시보호시설,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•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
신청절차	노숙인시설에 신청 → 지자체에서 결정(시·군·구 의료급여사업팀) →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조치(시·군·구 의료급여사업팀)
기 타	(중지일) 해당시설 퇴소일 *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월 20일(연장시 30일)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

- 또한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정병원(254개소)을 이용해야 하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이용률 저조
 - ※ 노숙인의료급여 1종은 의료급여증 대여, 의료쇼핑 등 우려하여 지정병원제 운영

〈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현황〉

구 분	계	1차의료기관	2차의료기관
계	254	209	45
서울	35	27	8
부산	17	16	1
대구	9	8	1
인천	6	5	1
광주	6	5	1
대전	7	5	2
울산	6	5	1
경기	45	41	4
강원	12	9	3
충북	14	13	1
충남	14	10	4
전북	16	10	6
전남	25	19	6
경북	24	21	4
경남	15	14	1
제주	2	1	1

* 지정병원 대부분 국·공립 병원(1차 의료기관은 보건소), 민간병원은 3개소

■ 현장의료지원체계의 지역별 불균형 심화

- 거리노숙인이 이용하기 쉬운 무료현장진료소(5개소)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약화
 - － 서울, 부산,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거리노숙인 대상 현장진료소 운영
 - － 따라서,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거나, 아웃리치 상담체계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, 적절한 의료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방치되는 사례 발생
 - － 또한, 현장진료소가 운영되어도 공중보건의 수가 부족하고, 공중보건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질도 보장하기 어려움

〈노숙인 현장진료소 및 공보의 배치 운영 현황〉

구 분	서 울	대 전	대 구	부 산	합 계
현장진료소	2개소	1개소	1개소	1개소	5개소
공보의 수	4명	1명	1명	1명	7명

※ '16년 이후 공중보건의 공급 부족으로 무료진료소에 더 이상의 지원 불가

■ ■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의 미비

-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개입강화 필요
 - －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한 보건팀 운영
 - ※ 서울 :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노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과 상담제공(주3회)
-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자원의 유기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
 - － 일부 지자체 및 시설은 민간의료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노숙인 민간진료를 유도하고 있으나,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부족
 - ※ 노숙인시설과 의료기관 자매결연, MOU체결하여 우선진료 실시

나. 추진계획

①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

- 노숙인지정병원의 단계별 확대
 - － 광역시 등 노숙인이 집중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충('15년 254개소 → '20년 264개소)

〈연도별 노숙인 지정병원 확충 계획〉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노숙인지정병원수	254개소	256	259	261	264
증 감	－	2	3	2	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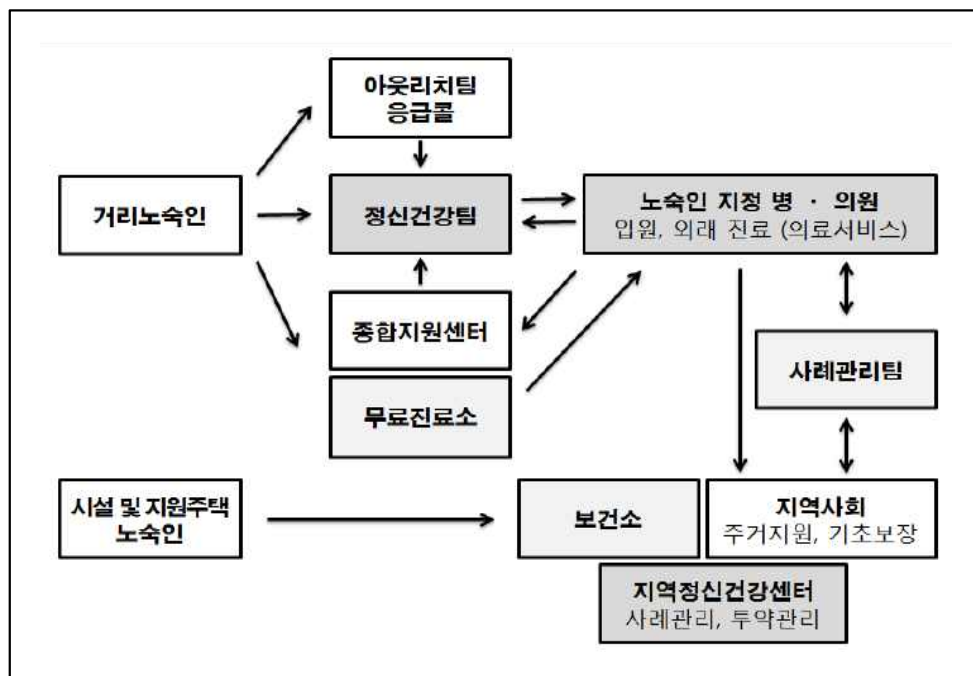
②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

-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진료소 설치 권고
 - － 100인 이상의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진료소 설치를 권장하고 소규모 노숙인 발생지역은 순회진료팀을 구성

③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(정신건강, 알콜중독)

- 지역 정신보건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만성적 노숙인의 의료지원 확대
 - － 지역정신보건사업 내 노숙인 대상 명시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
 - ※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수 : 50개소
- 아웃리치-위기관리사업과 연계된 노숙인의료지원체계의 개편 추진
 - － 위기관리사업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지역에서 운영하는 상시운영체제로 전환
-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지자체-민간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
 - － 민간의료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민간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
 - ※ 서울시의 경우 시립보라매병원과 협력관계 체결

〈노숙인 의료지원체계 재편〉



5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

가. 현 황

■ 노숙인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부족

- 노숙인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낮음
 - －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참여율 미흡
 - － 복지부의 자활사업에도 노숙인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노숙인에게 맞는 별도의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이 미흡

※ 지자체 노숙인 대상 자활사업현황 : (경기) 5개 사업단 50명, (부산) 1개 사업단 15명

〈노숙인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성과(고용노동부, 2014)〉

(단위 : 명)

구 분	참여 자수	종료* 자수	취업률 (%)	종료자에 대한 세부 현황			
				취업자		미취업자	
				취·창업자 (일반시장)	공공근로재정 일자리종료자	중도중단 종료자	기간만료 종료자
서울	47	33	63.6	21	2	4	6
부산	12	10	50.0	5	0	3	2
대전, 충청	22	17	64.7	11	1	2	3
인천, 경기, 강원	20	15	20.0	3	1	5	6
광주, 전라, 제주	5	4	25	1	0	3	0
대구, 울산	10	10	20.0	2	0	4	4
합 계	116	89	48.3	43	4	21	21

■ 노숙인시설의 고용지원 연계 기능 강화 필요

- 대부분의 노숙인시설은 주로 노숙인을 위해서 배정된 단기적 일자리 연계 중심의 고용 지원이 대부분
- 일단 취업해도 조기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된 일자리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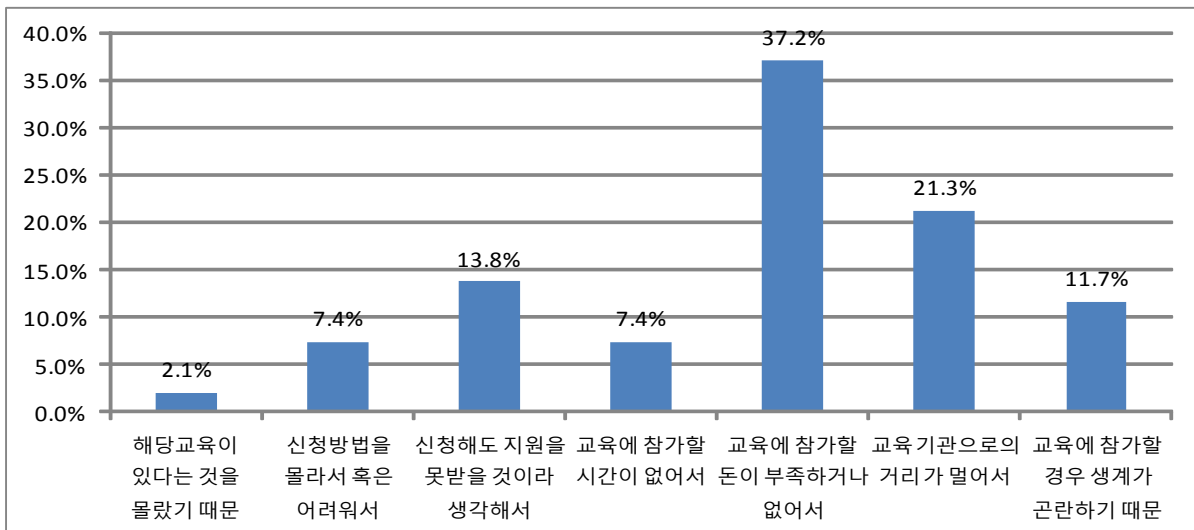
〈2012년 고용부 새희망고용센터 취업지원 성과(현장 실태조사, 2010)〉

(단위 : 명)

기관 구분		시설 유형	구직	알선	취업	취업세부실적	
						정부	민간
서울	브릿지종합지원센터	종합지원	471	327	153	70	83
	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	종합지원	457	333	185	51	134
부산	부산종합지원센터	종합지원	391	355	34	7	27
대구	대구종합지원센터	종합지원	377	377	72	47	25
인천	인천내일을여는집	자활시설	373	223	52	10	42
합 계			2,069	1,615	496	185	311

- 일하고자 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제공과 이에 대한 투자 필요
- ※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: 비용(37.2%), 접근성(21.3%), 신청해도 지원을 못받을 것 같아서(13.8%), 대체할 생계수단 부족(11.3%)(한국도시연구소 '13년)

〈노숙인시설 이용자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(한국도시연구소 조사자료, 2013)〉



-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일자리의 적극적 연계 필요
 - － 노숙인 등을 근로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연계를 도모할 필요

〈노숙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례〉

구 분	주요업무	채용인원	비 고
빅이슈(Big Issue)	문화잡지 제작 및 판매, 인식개선	50여명	
짜로사랑	두부제작 및 판매	15명	
행복나눔도시락	도시락 주문 제작 및 판매	20명	
두바퀴희망자전거	자전거 재활용 및 판매 / 수리	15명	
두손컴퍼니(Do son)	종이옷걸이 제작 및 판매, 납품	15명	
참살이영농사업단	풍덩이 양식, 영농사업	15명	
늘품공방	목공예, 다양한 소품 제작	7명	

나. 추진계획

① 노숙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

-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인원에 대한 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
 - － 고용노동부, 지자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배려 필요
- 노숙인이 진입가능한 일자리의 개발 및 창업지원의 확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확대
 - －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노숙인 등이 접근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적 발굴 및 증대
 - －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한 창업 유도

②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에 대한 ‘공공 일자리’ 제공 활성화

- 거리 노숙인, 시설입소자 중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필요
 - － 노숙인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
 - ※ 공원청소, 녹지관리, 공공시설물 청소, 자원재활용 등
- 안정적 주거비용을 마련하여 탈노숙을 유인하는 특별자활사업 실시
 - ※ 코레일 청소사업단 ‘희망의 친구들’ 및 지자체 노숙인 대상 자활사업실시(경기) 5개 사업단 50명, (부산) 1개 사업단 15명

3 [사회복귀]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관련복지서비스 연계

1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

가. 현 황

■ 의료기관 퇴원 / 시설퇴소 후 재정착을 위한 지원 부재

- 노숙인 시설 퇴소 후, 지역사회에 재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이 미흡
 - － 주거 및 일자리에 대한 정보,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 및 단절된 관계의 회복에 대한 안내 필요
- ※ 정부에서는 노숙인에게 동아리활동 지원, 인문학 강좌, 예술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지원 중('15년, 10억7천만원)

나. 추진계획

① 자립정착금 지원 등 마련

- 시설퇴소입소시 자립정착금 마련 프로그램 운영·확산
 - － 시설입소 후 자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하여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정금액을 추가 지원
- ※ 희망원룸 퇴소자에게 일정금액(임대료로 받은 금액)을 퇴소시 자립정착금 형태로 노숙인에게 지원

②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

- 시설퇴소자, 임시주거입소자, 임대주택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
- －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복귀한 노숙인을 일정기간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거나 인력지원

2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

가. 현 황

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 필요

-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정착을 하여도 다시 거리노숙인으로 전락하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남
 - ※ 만기 퇴소한 노숙인 중의 72%, 탈노숙한 사람중의 42%는 노숙인복지시설로 재입소(서울연구원, 한국 도시연구원 '15년)

나. 추진계획

①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

- 건강관리, 생활관리 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
 - － 지역사회 방문간호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이나 생활관리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

②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

-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유도

3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

가. 현 황

■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교육

- 시설입소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시설의 특색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,
 - －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을 위한 자활교육이나 사회복지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등 교육이 부재

나. 추진계획

①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

- 실제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자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의식 고취
 - － 거리노숙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목표설정

② 거리 노숙인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

- 거리 노숙인의 노숙인시설의 입소를 유도하고, 시설생활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단체생활의 규칙 등을 접할 기회 제공
 - * 거리노숙 → 시설입소 → 사회적응훈련 → 사회복귀

4 [인프라]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

1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

가. 현 황

■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

- 노숙인 정책의 가장 중요과제는 노숙인 등이 거리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
- 그러나, 현실은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- 민간에서 전국적인 일시집계조사(point-in-time counting)를 실시하고 있으나, 재원 부족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곤란

〈최근 5년간 노숙인 실태조사 시행 현황(2014)〉

구 분	전국노숙인실태조사	지자체 실태조사	조사시기
2010년	민간주도	민간주도	10월
2011년	보건복지부	조사없음	8월
2012년	민간주도	조사없음	10월
2013년	조사없음	서울시	분기별
2014년	조사없음	서울시	분기별

■ 법령에서 정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

- 「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」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
 - － 노숙인 등의 현황·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
 - ※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실시(2011, 한국도시연구소)

나. 추진계획

①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

- 기초적인 행정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

② 법령에서 정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(복지부)

-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(16)하여 정책성과 및 모니터링을 종합계획 수립 근거로 제공
- 정기실태조사 및 1차 노숙인 종합계획 평가 등을 근거로 2차 종합계획 수립(20년)

2 협의체에 기반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

가. 현 황

■ 노숙인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협력체계의 미비

- 노숙인의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주거, 고용, 의료 등 노숙인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유관 부처간 업무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미비

■ 노숙인복지지원을 위한 중앙정부-지방정부간 협력체계 미비

- 현재 노숙인 정책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나
 - － 중앙-지자체간 현안 중심의 협의만 이루어질 뿐,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논의구조는 부재한 상황

■ 노숙인관련 단체와 (중앙·지방)정부간 민간협력체계 미흡

- 노숙인 관련 민간협력체계는 국고지원사업의 노숙인 재활·요양시설협의체와 지방이양 사업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-지방 정부와 이들간 협조체계는 약화

〈노숙인시설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(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, 2014)〉

구 분	영역	시설분류	비 고
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	전국	노숙인재활시설, 노숙인요양시설	사단법인
서울노숙인시설협회	서울	종합지원센터, 일시보호시설, 노숙인자활시설, 쪽방상담소	사단법인
전국노숙인시설협회	전국		임의단체
NOCK홈리스대책위	－	기독교 노숙인 지원단체	종교법인

나. 추진계획

① 노숙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

- 노숙인 지원을 위한 주거, 고용, 의료를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협력사항을 조율 및 협의

〈중앙정부 노숙인지원 협의체 구성〉

구 분	부 서	인 원
보건복지부	자립지원과, 기초의료보장과, 정신건강정책과	각 1명
고용노동부	직업훈련관련 부서	1명
국토교통부	임대주택관리 부서	1명
기획재정부	복지예산과	1명

② 중앙부처-광역자치단체-지자체간 노숙인 지원 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

- 노숙인복지정책, 지자체 현안 등 중장기적인 노숙인 관련 정책 논의 및 조정
- 정기적 회의구조 마련으로 중앙정부-지자체 논의 지속성의 확보

③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

- 노숙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, 정책에 반영하고자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
- 평가 및 계획을 위해서 연 1회 운영

〈민관협력위원회 구성(안)〉

구 분	부 서	인 원
노숙인 자활분야	노숙인자활분야 시설 대표	1명
노숙인재활/요양분야	노숙인재활/요양분야 시설 대표	1명
학 계	노숙인 등의 연구 경력이 풍부한 학계(교수 등)	1명
공무원	중앙부처 / 지자체	각 1명
민간단체	노숙인 관련 지원경험이 풍부한 전문가(민간단체 활동가 등)	1명

3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

가. 현 황

■ 배치기준

- 노숙인 시설 입소자가 장애인·노인·정신질환자가 대부분(87.7%)이나,
 - 생활복지시설 중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은 가장 열악한 상황임

〈생활복지시설 생활지도원 1인당 배치기준 비교〉

구 분	중증장애인 시설	아동장애인 시설	지적시각 장애인시설	지체청각 장애인시설	노인요양 시설	정신요양 시설	노숙인 시설
배치기준	4.7	4	5	10	2.5	28	50

나. 추진계획

①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

- 입소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*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요양시설의 배치기준에 근접하도록 인력증원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검토

* 노숙인시설 기준 현재 50명당 1명임에 반해 정신요양시설은 28명당 1명 수준

※ 규모가 작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

Part VI

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VI

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

성과지표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고
거리노숙인 수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
	각 시·도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조사					
시설노숙인 수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전년대비 2% 감소	
	$(\text{전년도 시설입소자} - \text{평가년도 시설입소자}) \div \text{전년도 시설입소자} \times 100$					
현장보호활동 (아웃리치) 관리 비율	80%	85%	90%	95%	100%	
	$\text{현장활동 관리 수} \div \text{거리노숙인 수} \times 100$					
주거지원건수	전년대비 2% 증가	전년대비 2% 증가	전년대비 2% 증가	전년대비 2% 증가	전년대비 2% 증가	
	$(\text{임시주거비지원} + \text{공공임대주택} + \text{지원주택} + \text{시설입소}) \div \text{전년도}(\text{임시주거비지원} + \text{공공임대주택} + \text{지원주택} + \text{시설입소}) \times 100$					

Part VII

과제별 소관부처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

VII

과제별 소관부처

■ 총 4개 분야, 13개 과제

과제명	소관부처	지자체
1. 노숙인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확립		
①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		
□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강화 및 공적 및 민간자원연계	보건복지부·지자체	시행
□ 위기계층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보제공 및 연계 홍보강화	지자체	시행
② 효과적인 아웃리치 구축		
□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및 계획 수립	보건복지부·지자체	—
□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상담활동의 전문성 강화	지자체	시행
□ 거리노숙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의 구축	지자체	시행
2.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의 구축		
①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		
□ 응급잠자리 및 무더위 쉼터 운영	지자체	시행
□ 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	지자체	시행
□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	지자체	시행
②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		
□ 노숙인시설 유형에 알맞은 시설인력기준 마련	지자체	—
□ 노숙인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입소체계 마련	보건복지부·지자체	시행

과제명	소관부서	지자체
□ 여성·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 강화	지자체	
③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		
□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보호강화	지자체	시행
□ 자립의지,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대	국토교통부·지자체	시행
□ 여성, 만성적 거리노숙인 등 취약노숙인에 대한 주거우선지원	지자체	시행
④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		
□ 노숙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의 향상	보건복지부·지자체	시행
□ 노숙인 현장진료소 운영 확대	지자체	시행
□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자원 확대	지자체	
⑤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		
□ 노숙인 고용능력 향상 및 고용연계 강화	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·지자체	시행
□ 근로능력이 약한 인원에 대한 ‘공공 일자리’ 제공 활성화	지자체	시행
3. 효과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류복지서비스의 연계		
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		
□ 자립지원금 지원 등 마련	지자체	시행
□ 재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	지자체	시행
② 관련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		
□ 관련서비스와 연계	지자체	시행
□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강화	지자체	시행
③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		
□ 거리노숙인을 위한 캠프 운영	지자체	시행
□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및 자존감 향상	지자체	시행

과제명	소관부처	지자체
4.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		
① 거리노숙인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		
□ 연도별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	보건복지부	—
□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	보건복지부	—
② 협의체 기반의 정책모니터링		
□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	보건복지부	시행
□ 중앙-지자체간 노숙인 지원협력을 위한 회의구조 마련	보건복지부	—
□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		
③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		
□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	보건복지부·지자체	—